

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학교 분위기속에서 인권을 체험하도록 인권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 **4.2.2.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법집행 공무원, 군대와 같은 특수기관,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다수인시설 종사자, 교원, 우리사회의 여론 지도층(언론인, 예술인, 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는 UN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의 주요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경우 인권교육 이수를 필수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직교육 및 각종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과정이 설치되고 운영되도록 협의 지원 하고, 인권교육 우선집단, 취약집단을 위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지원 한다

#### **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세부목표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응답자의 5.3%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가 매우 적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회적 발언권이 약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에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위원회는 이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게 인권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세부목표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구축**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인권교육 과정 운영,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의 등 인권교육관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도 경험해왔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을 기초로 향후 인권교육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인권교육 실행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특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인권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 설립도 추진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교육은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인권적인 교육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을 다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의 전 프로세스가 인권적인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고, 인권교육다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와 교육자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우선 집중대상별, 수준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자(trainer's train program)를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 한다

### 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강조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가 예상되나 교육자료 및 교육시설 등 인권교육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권교육이 기존 교실중심 소집형 교육방식으로만 운영될 경우 소수의 학습자에게만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 인권교육 보완하면서 직장·가정 등 각자의 사적·공적 생활현장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적시(just-in-time)에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 **4.3.3. 인권교육원 설립추진**

인권교육의 수요의 확산·다양화에 따른 인권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인권교육을 전담할 (가칭)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대상별, 수준별 체계적인 인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 목표 5. 위원회 역량 강화

### 5.1.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 5.1.1.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 5.1.2.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 5.1.3.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 5.1.4.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5.2.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 5.2.1.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 5.2.2.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
- 5.2.3.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윤리 강화

### 5.3.국내·외 협력체제 강화

- 5.3.1.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 5.3.2.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 5.3.3.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 세부목표 5.1. 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부환경과의 적절하고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성

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은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들은 위원회법상 명시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의 각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정, 보완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 및 권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5.1.1.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위원회가 무소속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시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독립된 인권전담기구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사무처와의 관계의 정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대 정부관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 “독립청사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보완한다.

### **5.1.2.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위원회는 무소속·독립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권고를 해왔다. 이들 권고 가운데 상당수는 해당기관에 의해 수락, 이행되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차별시정 업무가 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이는 개인정보침해문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파리원칙이 천명하고 있는 무소속 독립국가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무소속 독립 권고형 국가인권기구로서 위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권고의 질적 향상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권고의 이행담보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5.1.3.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위원회의 지도력은 위원회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에 대한 위원회 및 구성원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원의 합의와 헌신을 이끌어내어 위원회의 내부적 지지기반을 탄탄히 하고, 이러한 내부적 단합된 지지기반을 토대로 대외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리더십은 위원회 정체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며, 해마다 예산수립 전에 워크숍 등을 통해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직원들이 함께 위원회의 비전을 검토하고, 차년도 사업 방향 및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리더십 전략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 리더십 및 구성원 전체가 조직의 비전 및 차년도 사업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도출하고, 구성원의 헌신과 역량 집중을 유도한다.

### 5.1.4.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표준화 모듈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업무상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효율적 업무 매체로서 매뉴얼을 개발 하되, 종래의 직무별 통합 매뉴얼은 물론 사건유형별 매뉴얼과 같은 업무유형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2006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핵심역량요소를 도출한 후,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

로 수립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훈련시행을 총괄할 교육전담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한다.

## **새부목표 5.2.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외부기관(예: 감사원)의 감독 및 통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윤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성 확보 기반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대국민, 전문가 집단,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활동, 위상, 이미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 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의 공보활동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대상 간담회 및 브리핑 수시운영, 웹진과 메일링 리스트의 효과적인 활용, 쌍방향 홍보물 제작, 국민참여 프로그램(명예 인권위원, 시민인권조사관, 청소년 인권모니터단, 위원회 평가단 등)을 개발 운영하고자 한다.

### 5.2.3.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윤리 강화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외부기관(예: 감사원)의 감독 및 통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윤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성 확보 기반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구성원으로서 인권적 교양과 품위 유지, 업무 태도와 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고양하고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일원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 또는 구성원들의 윤리성에 대한 도전이 심할 수 있는 대외활동에 있어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한다.

### 세부목표 5.3. 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

위원회의 역할은 위원회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인권·시민사회 단체, 전문가, 시장, 국제사회 등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기관/단체/개인과의 상시적인 업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협력체제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하며,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역화, 세계화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 실천계획

###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국제사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국내의 인권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국제 활동을 통한 국내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인권이슈의 국내 소개 및 활발한 인적 교류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 및 UN관련 기구,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는 제네바 또는 뉴욕에 연락관(international Liaison)을 파견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국내의 인권현안을 국제화하도록 하고, 주요 국제기구에 위원회 직원을 파견하여 주요 인권 이슈영역의 흐름, 주요 기관들의 동향, 인권정보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도, 정책적 체계 확립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국내 인권 현안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와 NGO 간의 역할분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대학, 인권관련 학계와의 연구용역 사업 추진 및 인권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위원회와 인권관련 연구 그룹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의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발전시킨다.

또한 향후 차별행위와 관련한 위원회 진정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성별,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 상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위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차별 예방 지침서(guideline) 개발, 민간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차별 예방 교육 실시, 인권 친화 기업 발굴 및 선정, 차별예방협의회 구성 등을 계획하고자 한다.

#### 5.3.4. 아시아지역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인권현안을 발굴 또는 현재 협력하고 있는 공통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PF를 비롯한 각 국가 NI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국제기구 및 NGO,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 붙임 2.

# 제1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1. 회의개요

- 일 시 : 2005. 12. 14. 14:00~15:50 (1시간 50분)
- 장 소 : 전원회의실
- 참석인원(9인)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위위원(3인) : 정강자 상임위원, 김만흠, 신혜수 비상임위원
  - 사무처(5인) : 박찬운 정책국장, 김형완 상담센터 소장, 간사 3인(임송, 김정린, 박숙미)
- ※ 김호준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단장(사무총장)과 역량강화기획팀장(나영희 국장)은 직원 채용 면접관계로 불참

### 2. 결정사항

- 특위 업무관장 범위는 제2안, “우선적으로 업무전략기획을 검토하고, 이어서 위상강화기획과 역량강화기획 내용 중 위원회 심의 필요사항”으로 함
- 발전기획단은 해산함.
- 사무처의 특위 참가범위는 사무총장, 3개 팀장, 간사 3인으로 하고, 실무보좌 기구는 사무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특위 명칭, 업무전략기획 대상기간, 작업추진 방식 및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
- 연내에 특위를 2회 개최함. 차기회의는 각각 12. 20(화) 10:00, 12. 27(화) 10:00에 개최하고, 회의 안건은 실무팀이 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결정함.

### 3. 주요 논의사항

#### ○ 최영애 특위 위원장

- 보고를 들으니, 발전기획단이 만든 기획안에 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함.
- 그러나,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특위가 논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한다는 주문에 동의하지 않음. 먼저 특위가 만들고자 하는 문건의 성격이 무엇인지 논의한 후, 작업방식, 작업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 ○ 정강자 위원

- 발전기획단 활동 결과 보고를 들으니, 전반적으로 향후 논의의 유효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함.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시 되는 사항들이 있음. 예컨대, 역량강화기획 내용 중 상당부분이 민간의 경영이론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위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타당한 방식인지 의문임.
- 업무전략기획의 성격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업무전략기획은 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할 인권 NAP의 위원회 버전(Version)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작성한 업무전략기획이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인지?

※ 이에 대하여 박찬운 국장이, 본 기획안에 정부 NAP 수립·실시에 관한 모니터링 및 기술자문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위원회 차원의 NAP 실행계획이라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위원회 발전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

- 이에 대하여, 정강자 위원은 “그럼 위원회 NAP를 별도로 수립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2중 작업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함.

※ 박찬운 국장이, 외국 인권기구의 예와 전략기획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함.

- 정강자 위원은, 업무전략기획 내용 중 운영원칙 이상의 것들은 계속 유효한 내용들이고,

위원회 목표 이하의 내용들은 매년 수정이 가능한 것들이므로 대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 신혜수 위원

- 발전기획단 검토 보고를 들으니, 전략기획의 필요성, 외부위원들을 포함하여 검토한 작업방식 등이 매우 타당하였다고 생각함.

- 다만, 보고를 들으니, 내용상 처음부터 위원회와 사무처 양자가 결합하여 검토했어야 했던 사항인 것으로 느낌. 문제는 왜 이러한 사항이 처음부터 양자가 같이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동안 위원회 VS. 사무처가 많이 유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 일 예로, "위원회와 사무처의 바람직한 관계", "역량강화 부분에 인권위원의 역량강화 내용(인권위원 신규 임명 시 오리엔테이션 필요성 포함)" 등이 포함되었어야 하나, 포함되지 못했음. 이는 처음부터 위원회가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임.

※ 이에 대하여, 박찬운 국장이, 제출된 발전기획단 검토결과를 특위가 논의하는데 필요한 초안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이해 해달라고 설명하고, 박숙미 간사가 "인권위원 역량강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업무전략기획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있었음" 을 설명

### ○ 김만흠 위원

- 발전기획단의 고민은 모순된 일 추진 방식의 결과임. 위원회는 큰 틀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합의하고, 세부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하여 박찬운 국장은, 발전기획단이 전략기획안 작성을 추진한 근본적인 취지가 바로 위원회가 사무처에게 Direction을 주자는 의미였다고 설명

※ 신혜수 위원은, 위원회의 큰 Direction은 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이 짜서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처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

#### 4. 행정사항

- 특위가 “발전기획단은 해산하고, 사무처의 특위 참가범위는 사무총장, 3개 팀장, 간사 3인으로 하며, 실무보좌 기구는 사무처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실무팀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안) 현 발전기획단 간사 3인 중 업무전략기획팀 간사만 전임으로 특위 실무를 보좌하고, 나머지 2개팀 간사는 원 소속으로 복귀하되, 비전임으로 특위 실무를 보좌
- 2안) 간사 3인 모두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특위 실무를 보좌
- 검토의견 : 1안(특위가 업무전략기획을 우선 검토하기로 결정한 점을 고려)  
※ 1안으로 결정

## 제2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1. 회의개요

- 일 시 : 2005. 12. 20(화). 10:00~12:00 (2시간)
- 장 소 : 전원회의실
- 참석인원(9인)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위위원(4인) : 김호준, 정강자 상임위원, 김만흠, 신혜수 비상임위원
  - 사무처(5인) : 사무총장, 박찬운 정책국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김형완 상담센터 소장, 임송, 박숙미 사무관

### 2. 특위 명칭 및 검토방식

- ◆ 특위 공식 명칭은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로 함
- ◆ 특위는 사무처가 1제시한 초안을 기초로 검토하되, 초안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함

- 전략기획문건은 위원회 활동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하고, 세부 활동 내용은 집행단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김만흠 위원)

### 3. 내용 검토

#### 가. 위원회의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 “존중하고” (삭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위원회 설립 초기에 설정된 내용인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의문임 (김만흠 위원)
  - “모든 사람의 인권” VS.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김만흠 위원)
    - 앞부분의 “사람이 사람답게”와 뒷부분의 “모든 사람”이 의미가 중복되고, 위원회의 관심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사무총장)
    -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으로 바꿀 경우, 사회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할 위원회가 자칫 당파성을 띠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바람직함.(김형완 소장)
- ⇒ 추후 추가 논의함

#### 나. 위원회의 사명

#####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 취지에는 공감,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설립 초기에 제시한 위원회 사명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장치 마련”, “조사·구제의 신속성·편의성...”, “인권의식 함양...”(구체적 내용은 2002년도 연보 참조)이었음. “모든 권력의 감시”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필요(최영애 위원장)
- 위원회의 감시대상을 “공권력”으로 제한 할 경우, 위원회 활동영역의 협소화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권력” 개념은 타당함(정강자 위원)
- 여기서 말하는 인권침해는 “인권침해” + “차별행위”이며, 차별행위의 경우 행위주체가 “사권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박찬운 국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음.(최영애 위원장) 살벌하게 느껴짐.(김호준 위원) 외부에 공표될 때, 무소불위 인권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신혜수 위원)



##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 ○ “헌법” 삭제에 대한 논의

- 위원회가 현재의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가 지향할 인권의 원칙과 기준으로 “헌법”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하지만, 헌법을 빼자는 이야기는 아님.(김호준 위원)
- 위원회가 현재의 결정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해석의 문제이지 헌법을 배척하는 것이 아님. 국가인권기구가 사법기구 밑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와 다른 해석도 가능함.(박찬운 국장)
- 헌법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문화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원회가 추구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김형완 소장)
-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범”은 어떤가? (김만흠 위원) (이에 대하여 박찬운 국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
- 위원회가 헌법의 해석·변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을 기본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빼는 것은 무리 (나영희 국장)
- 헌법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함. 헌법의 사문화 이슈는 기술적이고 Minor한 문제임. (신혜수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법 제2조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박찬운 국장)
- 순서를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사무총장)

### ○ “헌법” VS. “국제인권규범”의 나열 순서에 관한 논의

-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바, 3:2로 ‘헌법’ 우선이 우세하였음. ⇒ 이 결정을 전원위에 보고하고 논의하기로 함.

## 1. 인권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 재검토

- 위 사명을 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타 행위주체(인권시민단체 등)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도출했다는 설명은 나름대로 타당함.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사무총장)
- NGO 등과의 차별성은 위원회 기구의 특성이지 그 것을 근거로 미션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기타 "인권 주류화를 위한 리더십"(김만흠 위원), "인권 공동체에서의 주도적 리더십" OR "인권선진화를 주도함"(김호준 위원)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사명으로 추가 할 내용들>

- ◆ 신속한 조사·구제 기구
- ◆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 문제
- ◆ 인권 중심 문화적 토대 구축 등

⇒ 이상의 내용들과 위원회 5대 목표를 고려하여 사명 추가 검토

## 다. 위원회 운영원칙

- ◆ "합리성"을 "접근성(Accessibility)"로 교체
- ◆ "Professionalism"을 "Professionality"로 변경
- ◆ "연대성"을 "협력(Cooperation)과 연대(Solidarity)"로 변경
- ◆ 운영원칙들에 영어를 병기함.

## 라. 위원회 5대 목표

### ◆ “5. 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중 “위상”을 삭제

- 제시된 목표들이 “위원회의 목표”인지 “위원회 발전목표”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함. “5. 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는 위원회 발전목표임.(김만흠 위원)
- 위원회 위상 및 역량강화를 위원회의 목표로 삼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최영애 위원장, 신혜수 위원) 다만 “위상”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신혜수 위원)

## 제3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1. 회의개요

- 일 시 : 2005. 12. 27(화). 10:00~12:00 (2시간)
- 장 소 : 전원회의실
- 참석인원(10인)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위위원(3인) : 정강자 상임위원, 김만흠, 신혜수 비상임위원
  - 사무처(6인) : 박찬운 정책국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김형완 상담센터 소장, 임송, 김정린, 박숙미 사무관

### 2. 주요 논의사항

#### 가. 위원회 사명

- ◆ 인권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한다.(삭제)
- ◆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신설)

#### 나. 위원회 5대 목표

- ◆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 ※ 표현 수정('기능' 삭제)

- ◆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2. 국제인권 규범에 맞는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 표현 수정('국제적 수준의'→'국제인권 규범에 맞는')
- ◆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 '만족도' 삭제, '접근성' 추가
- ◆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 인권교육 및 홍보 ⇒ 4. 인권 교육 및 홍보의 체계화
  - ※ 키워드(체계화) 강조
- ◆ 5. 위원회의 역량 강화(존치)

#### 다. 목표별 '세부목표 및 실천계획' 검토

##### -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 ◆ 1.1. 사회권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 ※ 자유권 분야의 정책개발도 포괄할 필요를 고려
- ◆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차별시정 기능 강화
  - ※ 하위 실천계획 내용을 포괄
- ▲ 1.2.2.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인권위법상' 삭제

◆ 1.3.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 '상담 및' 삭제

▲ 1.3.1.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체계 구축 ⇒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인권 상담체계 구축

※ 현재도 상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 1.3.3.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활용 ⇒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 및 활용

## 제4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1. 회의개요

- 일 시 : 2006. 1. 4.(수). 10:00~12:00 (2시간)
- 장 소 : 전원회의실
- 참석인원(12인)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위위원(3인) : 정강자 상임위원, 김만흠, 신혜수 비상임위원
  - 사무처(8인) : 사무총장,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나영희 인권교육본부장, 김형완 침해구제총괄팀장, 심상돈 정책총괄팀장 임송 공공교육팀장, 김정린, 박숙미 사무관

### 2 주요 논의사항

#### 가. 주요 실천과제 제시에 관한 사항

- 제시된 업무전략기획이 각 부문별로 추진 방향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를 5~10개 정도 제시하는 것이 어떨지?(최영애 위원장)  
예시) 향후 3년 내에 지방사무소를 4개로 늘린다. 각 시도별로 인권교육 시범학교를 ○○개까지 늘린다. 시도 조례를 사회권 측면에서 검토한다. 등
- 참석 위원들 간에 “추가로 5~10개의 핵심 실천과제를 검토하여 업무전략기획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운영원칙

- ◆ 인권감수성(Sensitivity) (추가)

### 2) 위원회 5대 목표

- ◆ 2. 국제인권규범에 맞는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포괄하기 위함.

### 3) 목표별 '세부목표 및 실천계획' 검토

####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 ◆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1.3.1. 전방위적 인권 상담체계 구축 ⇒ 맞춤형 인권상담체계 구축
  - ▲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 및 활용  
⇒ 1.3.3.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잠정)

####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기반구축
  - ▲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 정부의 인권NAP 수립·이행을 위한 자문 및 모니터링



▲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 ⇒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 2.1.3.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신설)

▲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신설)

◆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2.2.1. 인권현안 발굴체계 확립 ⇒ 인권의제 발굴 체계 확립

◆ 2.3.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 삭제

▲ 2.3.1. 주요 국제인권논의에의 적극 참여 ⇒ 삭제

▲ 2.3.2. 국제인권기준에 저촉되는 국내법 실태조사 ⇒ 2.1.3.에 포함

▲ 2.3.3. 국내법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 2.1.2.에 포함

###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목표의 기술 순서(접근성, 실효성)에 따라 세부목표 순서를 조정(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실현→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 3.3.

▲ 3.1.1. 필터링 기능 강화 ⇒ 삭제

▲ 3.1.2. 사건처리 체계 정비 ⇒ 3.3.1.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 ◆ 3.2.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 3.1.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실현
  - ▲ 3.2.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 3.1.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 ▲ 3.2.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실시 ⇒ 3.1.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 ▲ 3.2.3. 진정한 만족도 제고 ⇒ 삭제
  
- ◆ 3.3.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 하위 항목 순서 조정
  - ▲ 3.3.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 ▲ 3.3.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활성화 ⇒ 3.3.2.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
  - ▲ 3.3.4.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강화 ⇒ 3.3.3.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 ▲ 3.3.1.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 3.3.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다. 행정 사항

- 업무전략기획안(5~10대 추진과제 포함)에 대한 특위 검토는 1. 23. 개최 예정인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함.
- 이를 위해, 향후 추가로 2차례(1. 9., 1. 13.) 특위를 개최함.

## 제5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1. 회의개요

- 일 시 : 2006. 1. 9.(월) 10:00~12:00 (2시간)
- 장 소 : 전원회의실
- 참석인원(12인)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위위원(3인) : 정강자 상임위원, 김만흠, 신혜수 비상임위원
  - 사무처(8인) : 박찬운, 나영희 본부장, 김형완, 심상돈, 임송 팀장, 김정린, 박숙미, 강명숙 사무관

### 2. 주요 논의사항

#### 가. 5대 목표

#### ◆ 4. 인권교육 및 홍보의 체계화 ⇒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초안에 기술된 교육 분야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구조를 재배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정강자 위원)
- 회의 결과보고가 결정사항 위주로만 작성되어 있는데, 특위 논의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지난 번 회의에서 4.2.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VS. NAP 권고사항과의 차이, 홍보계획 수립. 실사가 실천계획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음. “인권교육 및 홍보의 체계화”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음.(최영애 위원장)

※ 이에 대하여 박찬운 본부장이, 4.2.의 기본계획은 촉진자로서의 위원회 차원의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즉 인권 교육 분야의 Strategic Plan을 의미하는 것임.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위원회"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함.(박찬운 본부장)

- 인권교육과 홍보를 같은 범주에 기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음.(신혜수 위원)
-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됨.
  - 인권교육 제도화 및 홍보의 체계화(나영희 본부장)
  - 국민 인권의식 향상(심상돈 팀장)
  - 인권가치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박찬운 본부장)
- ※ 정강자 위원이 '인권가치'라는 표현의 모호성에 대하여 지적함.
  - 인권교육의 활성화(신혜수 위원)
  - 인권교육 및 홍보의 강화(정강자 위원)
  -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강화 등
- 다양한 의견들을 놓고 논의한 결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로 하기로 함.

## 나. 세부목표 및 실천계획

###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 4.1. 인권교육 기반구축

▲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존치)

▲ 4.1.3.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 4.1.2.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 4.1.3.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 4.2.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의 구축·시행 ⇒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존치)

▲ 4.2.2.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존치)

▲ 4.2.3.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교육 기회보장(신설)

◆ 4.3. 인권교육 관련 위원회의 역할 강화

▲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제공

▲ 4.3.2.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 홍보전략 계획 수립 및 실시⇒ 삭제

▲ 4.3.2.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신설)

○ 4.2.1, 4.2.2는 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목표 4.2.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도화 추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4.2.1.과 4.2.2.는 주로 제도권에 대한 교육에 해당하는데, 그 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계층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적절한 용어들 실무팀이 고민해 보기 바람. (정강자 위원)

※ 강명숙 사무관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기회 확대(보장)", "인권교육 기회 소외 계층에 관한 접근성 제고",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교육 기회보장"을 제시

○ 4.2.3.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인권교육 제도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위원회 인권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범주로 묶어, 4.3.1. 콘텐츠 개발 내용과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제6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1. 회의개요

- 일 시 : 2006. 1. 13.(금) 10:00~12:00 (2시간)
- 장 소 : 전원회의실
- 참석인원(9인)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위위원(2인) : 정강자 상임위원, 신혜수 비상임위원
  - 사무처(6인) : 박찬운, 나영희 본부장, 심상돈, 임송 팀장, 김정린, 박숙미 사무관

### 2. 주요 논의사항

#### 가. 세부목표 및 실천계획

#####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 ▲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 4.2.1. 학교교육과정의 인권교육 의무화
- ▲ 4.2.2.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존치)
- ▲ 4.2.3.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교육 기회보장 ⇒ 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 4.3. 인권교육 관련 위원회의 역할 강화 ⇒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구축

▲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제공  
⇒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 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신설)

▲ 4.3.3.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존치)

◆ 5.1. 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 5.1.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 5.1.1.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제 정비

▲ 5.1.2.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 5.1.3.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 5.1.4.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5.1.1.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인식 공유, 5.1.3. 영역별 기능통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삭제

※ 5.1.7.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강화 ⇒ 3.2.5.

◆ 5.2. 위원회의 접근성·투명성 제고 ⇒ 5.2. '접근성' 삭제

▲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확립 ⇒ 5.2.1. '객관적' 삭제

▲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외부 의견수렴 체계 확립  
⇒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

▲ 5.2.3. 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 ⇒ 5.2.3. 위원회 구성원의 직  
무윤리 강화

※ 5.2.4. 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 삭제

◆ 5.3. 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존치)

▲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 ⇒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및 지도력 발휘 ⇒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 5.3.3. 아시아지역의 선도적 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 5.3.3.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 5.3.3. 인권연구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 강화 ⇒ 삭제



## 제7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1. 회의개요

- 일 시 : 2006. 1. 17.(화) 14:00~15:30 (1시간 30분)
- 장 소 : 소회의실
- 참석인원(8인)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위위원(1인) : 정강자 상임위원
  - 사무처(6인) : 박찬운, 나영희 본부장, 심상돈, 임송 팀장, 김정린, 박숙미 사무관

### 2 주요 논의사항

#### 가.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관련

- ◆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방안으로 나영희 본부장(전 발전기획단 역량 강화팀장)이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보고관제”를 제시
- ◆ 이에 대하여 최영애 위원장이 인권위원 보좌 기구의 차이점 등을 지적하며, 현행 실무보좌 구조의 변화가 없는 한, 소위 부담 때문에 인권위원들이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리드해 나가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
- ◆ 현행 실무보좌 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인권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첫째, 위원회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 추진방식을 위원 주도의 Task Force Team(특위)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최영애 위원장)

둘째, 주요 사안에 대한 직권/방문 조사 시 인권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최영애 위원장)

셋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비공식으로 역할을 하는 방안(정강자 위원)

넷째,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슈화(정강자 위원)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이 의견에 대해서 최영애 위원장은, 실무보좌 인력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 피력

◆ 인권위원 대상 전문성 강화프로그램이 필요 함. 신임 인권위원에게는 인권위원으로서의 기본 훈련과정이 필요하고, 기존 인권위원들을 위해서도 침해, 차별, 조정, 국제 협력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함.(최영애 위원장)

◆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인권위원 워크숍 등 인권위원들이 논의하는 별도의 기회를 갖겠음.(최영애 위원장)

#### 나. 위원회 10대 과제 선정관련

◆ 인권정책본부장이 제시한 10대 과제 안은 "인권 Agenda"와 "위원회 Agenda"가 섞여 있음.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정강자 위원)

- ◆ 제목을 “2기 위원회 과제”로 할지 “향후 3개년 과제”로 할지도 논의하여야 함. 또한 굳이 10대 과제가 아니라 5대 과제로 제시해도 된다고 생각함.(심상돈 팀장)
- ◆ 5대 과제의 제시도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정강자 위원)
- ◆ 사회적 Agenda로 할지 위원회 Agenda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NAP 권고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과제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최영애 위원장)
- ◆ 1.23. 전원위에서 위원회 업무전략기획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10대 과제 선정을 같이 논의할 경우, 업무전략기획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10대과제와 업무전략기획안을 분리해서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함.(박찬운 본부장)
- ◆ 박찬운 본부장 의견대로, 우선 1.23. 전원위에 업무전략기획안 만을 상정하기로 결정

#### 다. 기타 사항

- 1.23. 전원위에 업무전략기획안 총괄표와 특위 논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Full text를 수정해서 논의안건으로 상정
- 업무전략기획안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은, 시간상의 제약, 외부 의견 수렴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 등으로 특위의 의사를 확정하지 못한 채로 1.23. 전원위에 기획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음.

문서번호	발전기획특위 실무팀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06. 1.
결재일자	2006. 1.
공개여부	공 개

기 안	정책본부장	사무총장	위원장
임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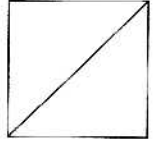
※ 제2차 전원위원회 (논의)안건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

2006. 1. 20(금)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실무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05- 호
보 고 연 월 일	2005. 9. 12. (05년 제19차)

보  
고  
안  
건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보고

제 출 자	사무총장
제출년월일	2005. 9. 12.

## 1. 추진 배경

- 2기 위원회 본격가동을 위한 조직 발전 계기 필요, 개헌 논의 대비, 차별시정 전담기능의 내실화 필요, 무소속·독립·통합형·권고형 인권기관이라는 위원회 위상에 대한 위협요인에의 대처 등 위원회 내·외부의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
- 이를 위해 위원회 위상, 업무, 역량 등 내·외부 조직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위원회 발전 및 활동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발전기획단」 구성 추진

## 2. 기획단의 임무

- 위원회 3개년 업무 전략 기획 (2006~2008년)
  - 제2기 위원회 사명을 구체화하고, 중점 추진 사업 분야를 선정
- 위원회 위상발전 기획
  - 무소속·독립·통합형·권고형 인권기관이라는 위원회 위상 위협 요인 (예: 인권위가 행정부 소속기관이라는 정부의 주장, 사법부의 처분성 인정, 장애 차별위원회의 독자설치 요구, 권고 불수용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인권위의 권한 및 기능강화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 (법무부, 행정부, 법원 등)의 지속적 반대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 헌법기관화 추진을 위한 대국민 (국회, 언론, 학계, 단체) 설득 전략 수립
  - 국제사회에서의 위원회 위상제고 방안 수립 등

## □ 위원회 역량발전 기획

- 위원회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 방안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식 공유·가공·확산을 위한 지식 경영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

※ 개헌국면에 대비한 현행 기본권 체계 검토는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기본권 발전 TFT」를 구성·검토

## 3. 구성 방향

- 총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3개 분과 (업무전략 기획, 위상발전 기획, 역량발전 기획) 설치

### □ 분과 구성 원칙

-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팀장과 최소한의 실무지원만 내부직원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 (3인) : 팀장 1, 과장급 1, 간사 1
- 외부전문가 (5명) 내외

- 팀 구성은 사무총장이 팀장과 협의하여 결정. 3개 팀의 팀장은,

- 업무전략 기획팀장 :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 위상발전 기획팀장 :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
- 역량발전 기획팀장 :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 간사는 역량 있는 위원회 직원 (사무관급)이 담당하되, 3개월간 12층 전문위원실에서 전임으로 근무

#### 4. 운영 방안

- 활동기간 : 2005. 9. 5. ~ 2005. 12. 10. (약 3개월)
- 단장은 팀장과 간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주간보고를 받고 기획단 활동을 통할 조정
- 분과 활동은 팀장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하되, 분과 통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무지원은 「업무전략 기획 분과」가 담당
- 간사 3인은 전담으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집중토론을 통해 상호 보강 효과를 도모
- 위원회 모든 부서는 위 3개 팀의 자료제출, 설명,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함

#### 5. 검토 보고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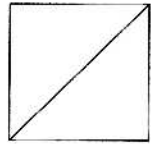
- 분과 활동 결과는 “위원회 4주년 기념일” (11.25) 혹은 “인권의 날” (12.10)에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발표함으로써 2기 위원회 조직 발전의 기회로 활용
- 「조직혁신팀」의 조직개편(안) (9월말 예정)과 그에 따른 후속 인사와 연계함으로써 조직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6. 향후 추진계획

- 기획단 구성·운영 계획안 위원장 보고 : 8. 30.
- 전원위원회 보고 : 9. 1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05-60호	보고 안건
보 고	2005. 11. 14.	
연 월 일	(05년 제23차)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 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제 출 자	사무총장
제출년월일	2005. 11. 14.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 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 1. 발전기획단 활동 경과

#### ○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전원위원회 보고('05. 9. 12.)

-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팀(업무전략 기획팀, 위상강화 기획팀, 역량강화 기획팀)을 둠.
- 팀 구성은 단장이 3개 팀의 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3개 팀의 팀장은 각각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김형완 상담센터 소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으로 함.
- 발전기획단 활동시한은 2005. 12. 10.까지 약 3개월로 하며, 3개 팀은 각각 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 위원회 위상 강화, 위원회 역량 강화 기획안을 작성함.

#### ○ 발전기획단 구성 및 활동개시('05. 9. 13.)

- 팀 구성 확정(단장 포함 총 25명; 각 팀별 팀장, 간사, 내부 팀원 1~3명, 외부위원 5명)

※ 불임 팀 구성 현황 참조

○ 팀별 초안 작성 추진('05. 9. 13. ~ 11. 11.)

- 위원회 내부 팀이 초안을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초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각 팀별 팀 전체회의(5~6회) 및 내부팀 회의(10회 내외) 실시
- 단장은 총 6회의 내부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각 팀의 활동 사항을 보고받고, 전체 발전기획단 활동을 통할·조정

※ 발전기획단 모든 활동 내용은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현재 향후 논의의 기초로 제공될 초안의 내용을 확정하고, 내용을 풀어 쓰는 작업 진행 중임.

※ 붙임 3개 팀 작성 초안(요약) 참조

## 2. 향후 주요 추진 필요 사항

○ 사무처에서 작성한 발전기획 초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검토·보완

○ 검토(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

- 내부 합의형성, 외부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 의견수렴 등

※ 발전기획단은 발전기획 초안이 마련될 경우,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외부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의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음.  
(붙임 워크숍 개요 참조)

○ 발전기획 최종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논의 및 성안

### 3.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제안

#### 가. 제안 이유

- 지금까지 사무처가 위원회 차원의 논의의 기초로 제공될 초안을 작성하여 왔음.
- 이제 초안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나. 특별위원회의 업무 관장 범위

- 특별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작성한 발전기획 초안을 검토·보완하여 전원위원회에 회부함.
- 현 발전기획단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보좌함.

#### 다.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

-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책소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관련 규정에 따라 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붙임 : 1. 발전기획단 구성현황  
2. 발전기획안 초안(요약)  
3. 워크숍 개요

## 붙임 1. 발전기획단 구성현황

□ 단장 : 궤노현 사무총장

□ 팀장 : 박찬운 인권정책국장(업무전략기획팀장),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  
(위상강화기획팀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역량강화기획팀장)

□ 내부팀원 및 외부위원

### ◆ 업무전략기획팀

이름		소속	비고
외부위원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장주영	변호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내부팀원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	팀원
	이수연	차별조사2과	“
	강명숙	인권교육담당관실	“
	임 송	정책총괄과	간사

### ◆ 위상강화기획팀

이름		소속	비고
외부위원	임지봉	건국대 법학과 교수(헌법학)	
	하승수	변호사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내부팀원	김성준	법무담당관	팀원
	김정린	인권상담센터 사무관	간사

### ◆ 역량강화기획팀

이름		소속	비고
외부위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대훈	성공회대 연구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정경수	순천대 법학과 교수	
	최희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정보실장	
내부팀원	심민석	인권자료실장	팀원
	박숙미	전문위원	간사